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604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상가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소희, 김한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9.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21219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를 “44,734,941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5. 2. 11.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44,734,94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44,734,941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별지> 기재 중 “3회차 2013. 7. 23.”을 “3회차 2013. 7. 25.”로, “4회차 2014. 1. 23.”을 “4회차 2014. 1. 25.”로, “5회차 2014. 7. 23.”을 “5회차 2014. 7. 25.”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는 “44,734,941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장성훈, 판사 최수진

〈참조〉

2012. 7. 23.자 []과 []이 작성한 화해 및 합의각서 제5조(손해배상액의 정산)
중 3회자 2013. 7. 23. 지급 잔액금 15,000,000원과 4회자 2014. 1. 23. 100,000,000원, 5
회자 2014. 7. 23. 100,000,000원에 대한 채권. 끝.

